
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

2026. 5. 29.

관계부처합동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추진배경 | 1 |
| II . 유턴정책의 현황 및 진단 | 2 |
| III . 추진방향 | 4 |
| IV . 세부 추진과제 | 5 |
| 1. 유턴 인정범위 재정립 | 5 |
| 2.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| 6 |
| 3. 평가·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| 7 |
| 4.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| 8 |
| 5. 유턴기업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 | 9 |
| V . 추진 일정 | 10 |

I. 추진배경

◇ 유턴정책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인 유입 동력 부족

-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*되는 등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

* 유턴기업 선정 감소: ('20) 17개 → ('22) 23개 → ('24) 20개 → ('25) 14개

- 그간 제도 개선*에도 불구하고, 유턴취소 증가 등 구조적 혁신에 한계

* 개선 연혁: ('19) 유턴 지원대상 확대, ('20) 첨단·공급망 대상 요건 완화 등

** 취소 기업수(선정연도 기준): ('14) 16 → ('15) 3 → ('16) 6 → ('18) 5 → ('19) 6 → ('20) 7개사

◇ “투자유치”가 경제안보·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부상

- 미-중 경쟁 격화, 공급망 리스크 확대* 등에 따라, 전략기술 확보·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(리쇼어링) 경쟁 치열

* 미국·일본 등의 첨단 반도체·소재, 중국의 핵심 광물(희토류 등) 수출통제 등

- 특히, 첨단전략분야 투자유치에 대규모 보조금 등을 파격 지원중

* (美) IRA 및 CHIPS Act, (日) AI·반도체 기반 강화 프레임, (EU) European Chips Act 등

◇ 해외투자 지형 변화에 따른 유턴정책 재검토 필요성 대두

- 우리 해외투자는 주요 거점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*하는 한편, 현지 시장공략·기술 확보 중심으로 재편 중**

* 對美 투자 / 對中 투자 비중 : ('20) 26.1% / 8.8% → ('24) 33.9% / 2.9%

** 제조업 해외진출요인 변화(수출입은행): ('01~'05) 수출 촉진(42%), 저임금 활용(15%)
→ ('21~'24) 현지시장진출(64%), 기술도입(21%)

- 해외투자의 국내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

👉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, 유턴정책을 개선하여 첨단전략 산업 유치·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

II. 유턴정책의 현황 및 진단

□ 유턴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협소한 '유턴' 개념 정의

- 초기 유턴정책은 해외 현지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
 - * 「유턴법」은 FTA 체결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악화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제정(13), 국내복귀·정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목적
- 한계기업 대상의 정책 설계로 '국내복귀(유턴)'의 정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,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유턴 유치에 한계
- 특히, 해외-유턴 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은 신산업 전환 제약
 - * 예시) 해외자동차부품 → 유턴ESS 부품, 해외제품 생산 → 유턴R&D는 유턴으로 불인정

【참고】 「유턴법」(제2조)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의 규정

1. 해외진출기업: (가)대한민국 국민·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and (나)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계속해 제조/정보통신/지식서비스/방역 산업 영위
2. 사업장: 사업을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
3. 국내복귀: (가)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·축소한 경우 or (나)첨단산업 또는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/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·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·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·증설

- 반면, 주요국은 리쇼어링 투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중
 - * 주요국은 형식적 요건 없이 첨단전략산업의 생산능력 확보 위한 리쇼어링에 초점

□ 엄격한 이행요건으로 현장의 애로 발생

- 기존사업장 유지(고용·면적 등) 등 엄격한 요건 적용은 사업 재편, AI 전환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도 괴리

【현장 목소리】 (고용) 복귀 사업장 포함 국내 모든 사업장의 고용 순증 요건 → "자동화 추세에 대한 고려 부족", (기존사업장) 3년간 규모 유지 요건 → "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사업재편 필요성 등 감안, 과도한 조건"(26.2, 기업)

-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, 이행요건 미충족 시 보조금이 기계적으로 정산환수되는 사례 발생

□ 일률적인 보조금 체계로 양질의 유턴 유인 미흡

- 보조비율은 높은 편*이나, 산정표(업종·지역별)에 따라 비율이 자동 산정되는 등 **일률적인 기준 적용**

* 평균 보조비율 비교('25 기준): 유턴보조금 21.7% vs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.4%

- 지원금액 한도 설정으로, 지방 중심의 **첨단·대규모 투자유치 한계**

* 현행 지원금액 한도: (일반) 수도권150/비수도권300억원, (전략) 수도권200/비수도권400억원

- 現 체계에서는 **선제적 정책 개입이 어렵고, 지원대상 선별을 통한 유턴 유도 기능이 제한적**

□ 유턴기업 밀착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 부족

- 유턴기업 유치·선정과 보조금 지원체계의 **이원화***로, **통합적 지원 및 이행관리 미흡**

* 현재는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이후, 기업이 지자체를 통해 유턴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식으로, 선정-보조금 지원-사후관리 연계 미흡

【현장 목소리】 “유턴 이후 각종 규제 등 애로를 전달할 방법이 없음”(‘25.4, 중소기업)

- 최근 투자계획 미이행(유턴취소) 사례*가 증가하고 있어, 이행 지원 등 **사후관리 강화 필요**

* 제도 초기에는 폐업이 유턴취소의 주요 사유였으나, 최근에는 투자 미이행 증가

-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어, 유턴 이행을 뒷받침하는 **입지·인력·인프라** 등의 지원과 **연계 미흡**

【현장 목소리】 “재정, 입지, 금융, 인력 등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침”(‘26.2, 협회·다수 기업)

◆ **유턴(리쇼어링)의 본질에 입각하면서, 양질의 유턴기업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정책 개선**

Ⅲ. 추진방향

비전

유턴을 통한 산업 핵심역량 확보

정책방향

전략분야 및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유턴 촉진

세부과제

유턴 인정범위
재설계

- ◆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
- ◆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

보조금 지원체계
개편

- ◆ “협상” 방식 도입
- ◆ 보조금 집행 방식 개선

이행관리 강화
및 합리화

- ◆ 평가 강화 및 이행기간 확대
- ◆ 이행요건 합리적 개선

전략적 유치 및
패키지 지원

- ◆ 유턴 타겟 선제 발굴 및 유치
- ◆ 지방정부 IR 플랫폼 구축
- ◆ 맞춤형 지원패키지 설계

밀착지원 및
홍보 강화

- ◆ PM 중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
- ◆ 「유턴투자지원단」으로 투자이행 뒷받침
- ◆ 성과지표 개발 및 홍보 강화

IV. 세부 추진과제

1 유턴 인정범위 재정립

◇ 「유턴법」 시행령 개정으로 ‘유턴’ 지원대상 확대

| 구분 | 현행 | 개선 |
|-----|--|--|
| 시행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·서비스로 한정 - 다만, 소재·부품, 생산공정 유사성 등을 검토해 동일성 인정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기능·용도, 핵심기술, 공급망 등을 유사성 검토 요소로 추가 (단서 예외규정 보완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‘해외사업장 구조조정’ 면제대상 ‘첨단산업·공급망’ 규정(해당기술 중심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면제대상인 첨단·공급망 분야에 ‘마더팩토리’ 포함 |

□ ‘제품·서비스의 동일성’ 요건 완화 (시행령 개정)

* (현행)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·서비스와 같거나 유사 (표준산업분류상 ‘중분류’) 다만, 소재·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해 동일성 인정 가능

○ 업종 유사성 판단시 기능·용도, 핵심기술, 공급망 등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

* 해외제품생산-국내 R&D설비투자의 경우에도, 유사성 판단을 통해 예외 인정 가능

○ 신산업 전환 및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내 투자 촉진

□ ‘해외사업장 구조조정’ 면제대상 확대 (시행령 개정)

* (현행) 첨단전략기술·미래자동차기술·신성장동력산업기술 등 세부기술(제품) 규정

○ 첨단·공급망 분야에서, 마더팩토리(핵심 제조시설)를 국내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·확대하더라도 유턴 인정

* 개정안(핵심 제조시설 정의): 제조공법의 개발, 시제품 실증·생산,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에 기술전파,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장

○ 첨단·핵심역량 유치를 통해 제조·혁신 경쟁력 강화

2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

◇ 지방 중심의 유턴 촉진을 위해 ‘협상’ 방식으로 보조금 체계 개편

□ 전략분야 및 대규모 유턴 대상 ‘협상 트랙’ 신설

- ‘외국인투자 현금지원’을 벤치마킹하여,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간 협상을 거쳐 지원규모 결정
- 지원 대상은 ①첨단산업·공급망품목 등 전략분야* 또는 ②일정 규모 (예: 1천억원) 이상의 유턴투자
 - * 첨단전략기술, 소부장핵심전략기술, 국가전략기술, 첨단기술, 신성장동력기술 등
- △비수도권 투자(지역균형발전도 등), △청년 중심 고용 창출, △첨단전략 기술 및 △마더팩토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규모 차등 산정
 - * 지원이력 여부, R&D 투자규모, 유치경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
- 대규모 지방투자 및 첨단전략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한도 기준을 지원금액 상한에서 보조비율 상한 설정 방식으로 개편

□ ‘일반 트랙’은 지방투자보조금 수준으로 보조비율 조정

- 일반 업종·소규모 투자는 개별 협상 없이 산정표의 보조비율을 적용하는 일반 트랙으로 운영
- 다만, 기본 보조비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으로 조정
 - * (유턴)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vs (지투)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, 지방 신·증설

□ 보조금 집행방식 개선

- 기존 지방자치단체 보조에서 기업 직접 보조 방식으로 개편하여, 실집행 지연 등 문제 개선

3 평가·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

◇ 유턴투자 이행을 제고를 위해 평가·관리를 강화하되, 이행요건은 기업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

□ 투자계획·기업 적격성에 대한 평가 강화

○ 선정 단계부터 투자계획의 구체성, 이행역량에 대한 평가·심의를 강화하여, 부실기업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을 제고

* (현행) 유턴투자 '계획'만 심사 / 지자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기업의 타당성을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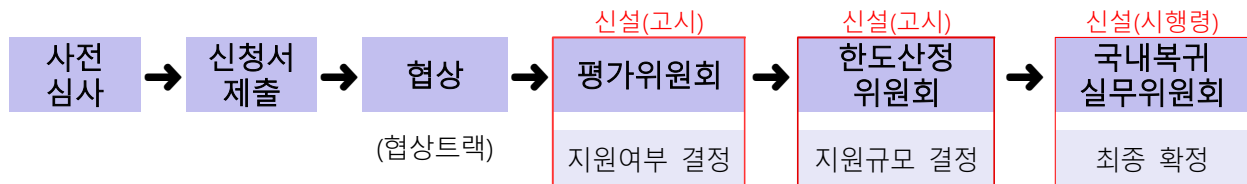
○ 심의 강화를 위해 **국내복귀실무위원회**(위원장: 국장급) 신설(시행령 개정)

* 유턴기업 선정·보조금 심의 절차:

(현행) 산업부 / 보조금심의위원회 → (개선) 국내복귀실무위원회로 일원화

○ '협상' 방식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세부절차 마련

< 유턴보조금 지원절차 (예시) >



□ 보조금 이행관리 기간 확대

○ 투자완료 후 이행기간을 지원규모에 따라 확대해 사후관리 강화

* (현행) 일률적으로 3년 → (개선)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3년+a로 확대

□ 기업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이행요건 개선

○ 이행 과정에서 고용계획 초과 달성 시, 사후 인센티브 부여

○ 자동화 추세와 사업재편 필요성 등을 고려해, 기존사업장의 고용·면적 유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

* 기존사업장 유지 현황은 지속 관리하되, 보조금 정산시 실무위원회에서 M.AX 등 감소 사유를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

4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

◇ 핵심 역량을 보유한 유망 타겟을 발굴·유치하고, 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유턴투자 적기 이행 뒷받침

□ 유망한 유턴 타겟을 선제적으로 발굴·유치

- 첨단산업, M.AX, 공급망, 5극3특 성장엔진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분석해 유망 품목 및 기업 도출
- 후보기업 대상으로 프로젝트 진척도 등을 고려해 유치기관(코트라) → 정부 실무급 → 고위급 접촉 등 단계별 유치활동 전개
 - * 고위급 면담, 각종 업계 간담회 계기 국내복귀 투자 유도
- 아울러, 해외 유턴거점 무역관(20개소)을 통해 관심기업 지속 발굴
 - * 해외사업장 컨설팅, 진출기업 네트워킹, 유턴지원 홍보 등(9개소: 전담직원 상주)

□ 유턴기업 대상 '지방정부 IR 플랫폼' 구축

- '국내복귀 지원포럼'*과 연계하여, 유망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(맞춤형 패키지 제시 등)을 위한 설명회 개최
 - * 국내복귀 지원포럼은 유공자 포상·세미나 등을 위해 연 1회 개최 중으로, 이와 연계(back-to-back)하여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설명회, 1:1 매칭 상담 등 개최 추진

□ 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패키지 설계

- 산단 등 입지* 지원,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인프라 구축
 - *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기반 조성 및 입주 등 지원
- 외국인 고용한도 완화(기반영)*, 인력 발굴·교육 지원(퀵스타트)** , 고용촉진장려금*** 우대 검토 등 지원
 - * 비수도권 유턴기업(제조업)은 기업규모 무관 외국인 고용 허용, 상한(50명) 삭제('26~)
 - ** 퀵스타트: 기업의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발굴·교육 지원 ('26년 15억원)
 - *** 노동부장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 지원 ('26년 206억원)

5 유턴기업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

◇ 투자 프로젝트별 PM(프로젝트 매니저)을 지정해 유턴 소주기를 관리하고, 성과 확산을 통해 선순환 유턴 생태계 조성

□ 투자 프로젝트의 소주기를 관리하는 PM(프로젝트 매니저) 도입

- 투자 프로젝트별로 PM을 지정해 투자유치·협상부터 보조금 지원, 투자이행 등 사후관리까지 소과정 전담
- 보조금 지원체계 전환(지자체 보조 → 기업 직접보조 방식)에 맞춰 지원 기관도 일원화하여 밀착지원 강화

□ PM을 원스톱 창구로 투자애로 적극 지원

- PM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, 신설 유턴투자지원단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 및 건의하는 역할 수행

□ 「유턴투자지원단」을 구성해 유턴 이행 뒷받침

- 관계부처, 지방정부, 업계가 참여하는 ‘유턴투자지원단’을 구성하여, 유턴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애로 해소 지원

* 유턴투자지원단은 사안별로 맞춤형·탄력적으로 구성하되, 분기별 개최 추진

□ 재정립된 유턴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성과지표 개발

-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유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,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토대로 인식개선 추진
- 기존의 양적 평가(유턴기업 수 등)에서 벗어나 유턴 정책의 기술혁신·산업생태계 기여도 등 질적 성과를 평가할 지표 개발 및 도입

* 지표 예시: 첨단산업 유턴기업 비중, 지역균형발전도별 비중 변화, 청년 및 지역 인재 고용비율, 국내협력업체 증가 등

V. 추진 일정

| 정책 과제 | 소관부처 | 추진 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1.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| | |
| ·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 (시행령 개정) | 산업부 | '26.下 |
| · 해외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 (시행령 개정) | 산업부 | '26.下 |
| 2.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| | |
| · 협상 트랙 신설 | 산업부 | '26.下 |
| · 보조금 집행방식 개선 | 산업부 | '26.下 |
| 3. 평가·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| | |
| · 평가·심의 강화 및 절차 마련 | 산업부 | '26.下 |
| · 이행기간 확대 및 이행요건 개선 | 산업부 | '26.下 |
| 4.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| | |
| · 유턴 타겟 품목 및 기업 도출 | 산업부 | '26.下 |
| · 지방정부 유턴 유치 설명회 개최 | 산업부 | '26.下 |
| · 산단 등 입지 및 인력(퀵스타트) 지원 | 국토부·산업부 | '27~ |
| ·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 지원 | 중기부 | '27~ |
| ·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검토 등 지원 | 노동부 | '27~ |
| 5. 유턴기업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 | | |
| · PM 지원체계 구축 및 유턴투자지원단 구성 | 산업부 | '26.下 |
| · 유턴 성과지표 개발 및 유턴정책 홍보 강화 | 산업부 | '26~ |